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바이오헬스케어 기술 분야의 신속·정확한 특허 심사를 위해 바이오헬스케어심사과를 바이오기반심사과로 개편하면서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바이오진단분석심사팀, 바이오의약심사팀, 헬스케어기기심사팀 및 헬스케어데이터심사팀을 신설하고, 서비스상표 분야의 신속·정확한 심사를 위해 서비스상표심사과를 전문서비스상표심사과로 개편하면서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일반서비스상표심사팀을 신설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산업재산통상협력팀, 국제특허출원심사2팀을 폐지하면서 국제특허출원심사1팀의 명칭을 국제특허출원심사팀으로 변경하고,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조성을 위해 인력 6명(4급→3급 또는 4급 1명, 5급→4급 또는 5급 5명)의 직급을 상향조정하며,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특허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국제협력과, 산업재산통상협력팀”을 “국제협력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8항을 삭제한다.

⑦ 국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국제협력(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과의 다자 및 양자, 통상 등 협력을 포함한다)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추진
2. 외국 및 국제기구과의 산업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양자 및 다자간 국제협력 총괄
3. 외국 및 국제기구의 산업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정보 수집 및 관리
4. 산업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남북협력에 관한 정책수립 및 추진
5. 국가 간 특허심사결과의 상호 활용·협력 및 특허·실용신안제도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산업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국제조약 및 협정에 관한 사항

7.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등 다자·양자간 산업재산권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
8. 산업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분야 해외 주재관 및 파견관 관리 및 활동 지원
9. 산업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인력의 국제기구 진출 관련 업무의 총괄
10. 공무 국외출장 관리 및 지원
11. 해외의 산업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홍보, 민원대응 및 해외고객 지원
12. 산업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행정 서비스의 해외 수출
13. 산업재산권에 관한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과의 협력사업의 총괄·조정·시행
14. 세계지식재산기구 한국신탁기금 총괄·조정
15. 그 밖에 산업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제11조제2항 중 “서비스상표심사과, 기계전자상표심사팀”을 “전문서비스상표심사과, 기계전자상표심사팀, 일반서비스상표심사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전문서비스상표심사과장은 금융, 의료, 법무, 연구, 통신 등과 관련된 전문서비스업분야의 상표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⑨ 일반서비스상표심사팀장은 도·소매업, 식음료업, 숙박업 등과 관련된 일반서비스업 분야의 상표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제12조제2항 중 “가전제품심사과, 국제특허출원심사1팀, 국제특허출원심사2팀”을 “가전제품심사과 및 국제특허출원심사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제특허출원심사1팀장”을 “국제특허출원심사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을 삭제한다.

제12조의2제2항 중 “바이오헬스케어심사과”를 “바이오기반심사과”로, “스마트제조심사팀”을 “스마트제조심사팀, 바이오진단분석심사팀, 바이오의약심사팀, 헬스케어기기심사팀, 헬스케어데이터심사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3D 프린팅 및 스마트 가공”을 “3D 프린팅, 금속가공, 플라스틱가공 및 스마트제어기기”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장은 머신러닝, 딥러닝, 영상인식, 시각지능, 음성인식 및 빅데이터서비스 분야의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⑤ 바이오기반심사과장은 바이오시스템, 바이오응용, 바이오소재, 합

성생물 및 유전체 분야의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⑥ 지능형로봇심사과장은 로봇팔, 로봇매니퓰레이터, 로봇제어, 로봇 인터페이스, 로봇모니터링 및 로봇시뮬레이션 분야의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⑨ 바이오진단분석심사팀장은 분자진단, 진단방법, 생물대사 및 단백질공정 분야의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⑩ 바이오의약심사팀장은 항체의약, 차세대약, 펩티드의약 및 바이오약물전달 분야의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⑪ 헬스케어기기심사팀장은 헬스케어식별기기, 헬스케어측정기기, 헬스케어분석기기 및 헬스케어진단기기 분야의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⑫ 헬스케어데이터심사팀장은 생물데이터, 의료데이터, 의료서비스 및 디지털케어 분야의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제13조제3항 중 “전력회로”를 “전기차전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컴퓨터 메모리회로”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유기소재, 바이오소재”를 “유기소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바이오향약, 제제향약”을 “제제향약”으로 한다.

별표 1 중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4”를 “15”로,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37”을 “36”으로,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수의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기상사무관·보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의무사무관·약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72”를 “177”로, 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수의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기상사무관·보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의무사무관·약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777”을 “772”로 한다.

별표 2 중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4”를 “15”로,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37”을 “36”으로,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수의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기상사무관·보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의무사무관·약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77”을 “182”로, 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수의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기상사무관·보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의무사무관·약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관 “811”을 “806”으로 한다.

부령 제24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중 “있는 산업재산통상협력팀, 기계전자상표심사팀”을 “기계전자상표심사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국제특허출원심사1팀장”을 “국제특허출원심사팀장”으로 한다.

부령 제109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 중 “산업재산창출전략팀 및 국제특허출원심사2팀”을 각각 “산업재산창출전략팀”으로 한다.

부령 제505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각 팀의 존속기한까지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각 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과장이 분장한다.

1. 반도체소재심사팀장: 반도체설계심사과장
2. 반도체조립공정심사팀장: 반도체제조공정심사과장
3. 반도체제조장비심사팀장: 디스플레이심사과장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일반서비스상표심사팀, 바이오진단분석심사팀, 바이오의약심사팀, 헬스케어기기심사팀 및 헬스케어데이터심사팀은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팀의 존속기한까지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각 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과장이 분장한다.

1. 일반서비스상표심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 전문서비스상표심사과장
2. 바이오진단분석심사팀장, 바이오의약심사팀장, 헬스케어기기심사팀장 및 헬스케어데이터심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 바이오기반심사과장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산업재산보호협력국) ① (생략)	제9조(산업재산보호협력국) ① (현행과 같음)
② 산업재산보호협력국에 산업 재산보호정책과, 산업재산분쟁 대응과,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 찰과, 상표특별사법경찰과, 국 <u>제협력과</u> , 산업재산통상협력팀 및 부정경쟁조사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 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각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 기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 ·임업사무관·수의사무관·해 양수산사무관·기상사무관·보 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의 무사무관·약무사무관·환경사 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 ·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으로 보한다.	② ----- ----- ----- ----- 국제 <u>협력과</u> ----- ----- ----- ----- ----- ----- ----- ----- ----- ----- ----- ----- ----- ----- ----- -----.
③ ~ ⑥ (생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u>국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⑦ <u>국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산업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1. 산업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u>영업비밀보호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추진</u> 2. <u>산업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외국과의 양자 간 국제협력 총괄</u> 3. <u>삭 제</u> 4. <u>주요국의 산업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정보의 수집 및 관리</u> 5. <u>산업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남북협력에 관한 정책수립 및 추진</u> 6. <u>산업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분야 해외 주재관 및 파견관 관리 및 활동 지원</u> 7. <u>공무 국외출장 관리 및 지원</u> 8. <u>해외의 산업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민원대응 및 해외고객 지원</u> 9. <u>국가 간 특허심사결과의 상호 활용·협력 및 특허·실용신안제도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u> 9의2. <u>산업재산권, 부정경쟁방</u>	<u>영업비밀보호에 관한 국제협력(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과의 다자 및 양자, 통상 등 협력을 포함한다) 총괄</u> 2. <u>산업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추진</u> 3. <u>산업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남북협력에 관한 정책수립 및 추진</u> 4. <u>국가 간 특허심사결과의 상호 활용·협력에 관한 사항</u> 5. <u>산업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국제조약 및 협정에 관한 사항</u> 6. <u>산업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자유무역협정을 포함하는 통상협상 및 이를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u> 7. <u>세계지식재산기구 한국신탁기금에 관한 사항</u> 8. <u>산업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행정 서비스의 해외 수출</u>
--	---

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행정 서비스의 해외 수출

10. 그 밖에 산업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외국과의 양자 간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⑧ 산업재산통상협력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국제기

9. 산업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과의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10. 산업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인력의 국제기구 진출 및 해외 정부·기관 관련 업무의 총괄

11. 산업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분야 해외주재관·파견관 관리 및 활동 지원

12. 공무 국외출장 관리 및 지원

13. 산업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국제동향·정보 수집 및 관리

14. 산업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해외홍보, 민원대응 및 고객 지원

15. 그 밖에 산업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삭 제>

구와의 협력 총괄

2. 산업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다자협
력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3. 산업재산권 인력의 국제기구
진출 관련 업무의 종합·조정
4. 산업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국제조약
및 협정에 관한 사항
5. 자유무역협정 등 외국과의
다자·양자간 산업재산권 통
상협상에 관한 사항
6. 산업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국제기구
의 동향 및 국제협정·조약
등 제도에 대한 조사·연구
7. 산업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해외홍보
에 관한 사항
8. 산업재산권에 관한 개발도상
국 및 최빈국과의 협력사업의
총괄·조정·시행
9. 세계지식재산기구 한국신탁
기금 총괄·조정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
항에 관한 국내 관계 기관과

의 협조

⑨ (생 략)

제11조(상표디자인심사국) ① (생 략)

② 상표디자인심사국에 상표심사정책과, 디자인심사정책과, 생활용품상표심사과, 화학식품상표심사과, 서비스상표심사과, 기계전자상표심사팀, 국제상표심사팀, 생활디자인심사과 및 산업디자인심사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각 팀장은 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 ⑥ (생 략)

⑦ 서비스상표심사과장은 도·소매업 등 서비스업 분야의 상표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⑧ (생 략)

<신 설>

⑨ (현행과 같음)

제11조(상표디자인심사국)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전문서비스상표심사과, 기계전자상표심사팀, 일반서비스상표심사팀 -----

-----.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전문서비스상표심사과장은 금융, 의료, 법무, 연구, 통신 등과 관련된 전문서비스업 -----
-----.

⑧ (현행과 같음)

⑨ 일반서비스상표심사팀장은 도·소매업, 식음료업, 숙박업 등과 관련된 일반서비스업 분야의 상표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9 ~ 11 (생략)

제12조(특허심사기 획국) ① (생략)

② 특허심사기획국에 특허심사총괄과, 특허제도과, 생활용품심사과, 식품생물자원심사과, 주거기반심사과, 가전제품심사과, 국제특허출원심사1팀, 국제특허출원심사2팀을 두며, 특허심사총괄과장, 특허제도과장, 생활용품심사과장, 식품생물자원심사과장, 주거기반심사과장 및 가전제품심사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각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수의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기상사무관·보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의무사무관·약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행정사무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
를 분장한다.

⑩ ~ ⑫ (현행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와 같음)

제12조(특허심사기 획국) ① (현행
과 같음)

② -----

----- 가전제품심사
과 및 국제특허출원심사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 ⑧ (생략)

⑨ 삭제

⑩ 국제특허출원심사1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2. (생략)

⑪ 국제특허출원심사2팀장은
국제출원에 대한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와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
다.

제12조의2(디지털융합심사국) ①
(생략)

② 디지털융합심사국에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 사물인터넷심사과, 바이오헬스케어심사과, 지능형로봇심사과, 자율주행심사팀, 스마트제조심사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각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수의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기상사무관·보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의무사무관·약무사무관·

-----.

③ ~ ⑧ (현행과 같음)

⑩ 국제특허출원심사팀장-----
-----.

1. 2. (현행과 같음)

<삭제>

제12조의2(디지털융합심사국) ①
(현행과 같음)

② -----

----- 바이오기반심사과-----

---- 스마트제조심사팀, 바이오
진단분석심사팀, 바이오의약심
사팀, 헬스케어기기심사팀, 헬
스케어데이터심사팀-----

환경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
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
사무관 · 행정사무관 또는 사서
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장
은 빅데이터 서비스, 머신러닝,
영상음성인식, 데이터 입출력,
데이터 전송 및 데이터 제어 분
야의 특허출원 · 실용신안등록
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
장한다.

④ (생 략)

⑤ 바이오헬스케어심사과장은
바이오시스템, 바이오응용, 생
물분석, 의료데이터, 의료진단
및 생체측정 분야의 특허출원 ·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
사 사무를 분장한다.

⑥ 지능형로봇심사과장은 로봇
제어, 로봇 가공 및 산업로봇 분
야의 특허출원 · 실용신안등록
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
장한다.

-----.

③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장
은 머신러닝, 딥러닝, 영상인식,
시각지능, 음성인식 및 빅데이
터서비스 분야의 특허출원 · 실
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④ (현행과 같음)

⑤ 바이오기반심사과장은 바이
오시스템, 바이오응용, 바이오
소재, 합성생물 및 유전체 분야
의 특허출원 · 실용신안등록출
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
장한다.

⑥ 지능형로봇심사과장은 로봇
팔, 로봇매니퓰레이터, 로봇제
어, 로봇인터페이스, 로봇모니
터링 및 로봇시뮬레이션 분야의
특허출원 ·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⑦ (생 략)

⑧ 스마트제조심사팀장은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3D 프린팅 및 스마트 가공 분야의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⑦ (현행과 같음)

⑧ -----
-----3D 프린팅, 금속가공, 플라스틱가공 및 스마트제어기기 -----

-.

⑨ 바이오진단분석심사팀장은 분자진단, 진단방법, 생물대사 및 단백질공정 분야의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⑩ 바이오의약심사팀장은 항체 의약, 차세대의약, 펩티드의약 및 바이오약물전달 분야의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⑪ 헬스케어기기심사팀장은 헬스케어식별기기, 헬스케어측정기기, 헬스케어분석기기 및 헬스케어진단기기 분야의 특허출

<신 설>

제13조(전기통신심사국) ①·②
(생 략)

③ 전기심사과장은 전력변환, 전동기, 전력회로, 전력전송 및 발전기 분야의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④ 컴퓨터심사과장은 컴퓨터 제어, 컴퓨터 보안, 컴퓨터 인터페이스, 컴퓨터 입출력 및 컴퓨터 응용 분야의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⑤ ~ ⑦ (생 략)

원·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⑫ 헬스케어데이터심사팀장은 생물데이터, 의료데이터, 의료 서비스 및 디지털케어 분야의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다.

제13조(전기통신심사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전기차전장-----

-----.

④ -----
-----컴퓨터 메모리 회로-----

-----.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14조(화학생명심사국) ①·②
(생 략)

③ 유기화학심사과장은 유기소
재, 바이오소재, 의약소재, 화장
품소재 및 화학소재 분야의 특
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장한
다.

④ 약품화학심사과장은 바이오
의약, 제제의약, 천연물의약 및
합성의약 분야의 특허출원·실
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특허법」 제89조에 따른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에 관한 심사 및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분
장한다.

⑤ ~ ⑪ (생 략)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4호 특허청
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
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
구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

제14조(화학생명심사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유기소
재-----

--.

④ ----- 제제의
약-----

-----.

⑤ ~ ⑪ (현행과 같음)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4호 특허청
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
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
구의 존속기한) ① -----

행 당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로 활용·운영하고 있는 산업재산통상협력팀, 기계전자상표심사팀, 국제상표심사팀, 산업디자인심사팀, 계측기술심사팀, 국제특허출원심사1팀, 자율주행심사팀, 재료금속심사팀, 스마트제조심사팀 및 방송미디어심사팀은 2025년 9월 8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팀의 존속기한까지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각 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과장이 분장한다.

1. 산업재산통상협력팀장이 분장하는 사항: 국제협력과장
2. ~ 5. (생략)
6. 삭제
7. 국제특허출원심사1팀장이 분장하는 사항: 특허심사총괄과장
8. 삭제
9. ~ 12. (생략)

----- 기계전자상표심사팀 -----

----- 국제특허출원심사팀 -----

② -----

<삭 제>

2. ~ 5. (현행과 같음)

7. 국제특허출원심사팀장-----

9. ~ 12. (현행과 같음)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9호 특허
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
구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
행 당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로 활용·운
영하고 있는 산업재산창출전략
팀 및 국제특허출원심사2팀은 2
025년 9월 8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산업재산창출전략팀 및 국제특허출원심사2팀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산업재산창출전략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산업재산정책과장이 분장하고, 국제특허출원심사2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특허심사총괄과장이 분장한다.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05호 특허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9호 특허
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
구의 존속기한) ① -----

----- 산업재산창출전략팀

(2) -----

산업 재산 창출 전략팀-----

-----산업 재산 정책 과장이

분장한다.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05호 특허

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 구의 존속기한)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반도체소재심사팀장, 반도체조 립공정심사팀장 및 반도체제조 장비심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 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 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반도체소 재심사팀장, 반도체조립공정심 사팀장 및 반도체제조장비심사 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전기심 사과장이 분장한다.	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 구의 존속기한) ① (현행과 같 음) ② 제1항에 따른 각 팀의 존속 기한까지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각 팀장이 분장하 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과장이 분장한다. 1. 반도체소재심사팀장: 반도체 설계심사과장 2. 반도체조립공정심사팀장: 반 도체제조공장심사과장 3. 반도체제조장비심사팀장: 디 스플레이심사과장
---	--

신·구정원대비표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특허청 공무원 정원표(제19조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 • <u>14</u>	• • <u>15</u>	+1
•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 <u>37</u>	• <u>36</u>	-1
• •	• •	• •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 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 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 수의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 기상사무관·보건사무관·의료 기술사무관·의무사무관·약무 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 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u>172</u>	<u>177</u>	+5

행정사무관 · 사서사무관 · 공업 사무관 · 농업사무관 · 임업사무 관 · 수의사무관 · 해양수산사무 관 · 기상사무관 · 보건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 의무사무관 · 약무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 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 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 ·	 <u>777</u> · ·	 <u>772</u> · ·	 -5
--	------------------------------	------------------------------	--------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특허청 공무원 정원표(제19조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 · <u>14</u>	· · <u>15</u>	+1
·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 <u>37</u>	· <u>36</u>	-1
· ·	· ·	· ·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 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 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 수의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 기상사무관·보건사무관·의료 기술사무관·의무사무관·약무 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 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u>177</u>	<u>182</u>	+5

행정사무관 · 사서사무관 · 공업 사무관 · 농업사무관 · 임업사무 관 · 수의사무관 · 해양수산사무 관 · 기상사무관 · 보건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 의무사무관 · 약무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 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 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u>811</u>	<u>806</u>	-5
·	·	·	
·	·	·	